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 4. 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杳 經 過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3월 30일

나. 발 의 자 : 박남오 의원 외 5인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9년 4월 2일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박남오 의원)

가. 제 정 이 유

○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이 외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함(안 제3조)
- 구청장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 공지 내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고,

수목 및 시설물의 일부 교체, 보수,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물품과 인력을 지원함(안 제5조)

- 지원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신청자와 시공자는 공동 협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(안 제6조)
-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(안 제7조)
-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 하고,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(안 제8조)
-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여 당초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(안 제9조)
-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해야 함(안 제10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「건축법」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 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
-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, 구 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구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審查結課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207 발의년월일 : 2009년 3월 일

발 의 자 : 박남오 의원외 인

1. 제정이유

○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이 외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함(안 제3조)
- O 구청장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 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 공지 내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비용 을 보조하고, 수목 및 시설물의 일부 교체, 보수, 청소 등에 대한 지 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물품과 인력을 지원함(안 제5조)
- 지원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 약을 체결한 시공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신청자와 시공자는 공동 협약서를 작성하 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(안 제6조)

-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(안 제7조)
-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,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(안 제8조)
-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여 당초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(안 제9조)
- O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해야 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축법」제35조·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

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규제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축법」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영등포지역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소유자"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권자, 「건축법」 제2조제12호의 건축주 또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. 2. "공개 공지 등"이라 함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.
 - 3. "시설물"이라 함은 조경·벤치·파고라·시계탑·분수·야외무대·경관조명· 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의료시설, 운동시설,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.
- **제4조(정비계획의 수립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- 제5조(지원내용) ① 구청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할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,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물품과 인력(이하 "물품 등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절차) ①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,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디자인위원회"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(이하 "시공자"라 한다)에게 공사를 의뢰하고,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)**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 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「건축법」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- 제8조(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) 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「건축법」 제35조 및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제9조(시정명령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 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**제10조(공사비의 반환)**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화하여야 한다.
 - 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
 - 2.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개 공지·공간 시설물 개선 참여 신청서

접수번호 소	유 자 주 소	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					
인격	^{역사항} 성명		주민등록 번 호				
<-	당개 공지·공간 정	형비 평면그림>	<정비를 원하시는 내용>				
			0				
			0				
			0				
			0				
	1 1140 1 11	₹I • 7II 0\01.II.					
공 사 내 역			난 :개 3) 파고라 :개 답 : 개 6) 조 경 : 본				
8 AI 41 T	2. 희망하는 공사비 부담금액 또는 부담률 :						
	╙───── ! 시설 -	- 바닥포장 및 친수공전					
고 o 1. 화단		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					
			토블럭 병충해 방지 / 고사목 교체				
기타 (기타 () 기타()				
2. 희망 식재		2. 친수공간	2. 바닥 훼손 교체 등				
()	바닥 분수 / 벽면 분수	보도블럭 (
공개 공지·공간의 환경을 정비·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 아울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·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「건축법」 제35조 및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,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,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·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							
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.							
		년 월	월 일				
신청자(소유자) (인)							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							
※구비서류 :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							
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							

<벌시 제2호시식/ 								
공개 공지·공간 시설물 개선 협약서								
등록번호		등록일						
공사위치								
공사범위	별첨 설계도서 및 내역서 참조							
착공예정일								
공사기간								
공사금액	₩원정 (부가가치세 포함)							
	- 영등포구청 부	담금 : ₩	원정 (%)				
	- 건 축 주부	담금 : ₩	원정 (%)				
건축주 공사비	₩원	정 (부가가치세 포	함)					
지급조건	- 선	금:₩	원정 (%)				
	- 잔	급:₩	원정 (%)				
	※ 잔금지급일:	공사완료 후	일 이내					
공개 공지·공간의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상기의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조건에 동 의하며, 기타 공사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								

건축주와 시공자 양자간에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.

년 월 일

건 축 주 시 공 자

시업지등록번호: 주민등록번호:

회사명:

주 소 : 주 소 :

(인) 성명: 성 명 : (인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

※구비서류 : 설계도서 및 내역서 각 1부

시공자의 선급금 보증서 사본 1부